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: 제2026-59호(2026. 7. 3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: 다목적 계류장치(1기), 목재 바지선(6기)
3. 점용·사용의 장소: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3번지 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: 2,495㎡(2026. 7. 5. ~ 2029. 7. 4.)
5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- 성 명: 제덕어촌계장 김현태
 - 주 소: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 179번길 17-17

2026. 7. 3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